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이필레 의원)

의안 번호	20-37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5. .

발 의 자 : 이필레, 김기석, 김영미,  
김종선, 김진천, 신종갑,  
장덕준, 채우진

## 1. 제안이유

지진재해에 대한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, 지진방재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
다.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(안 제4조)

라. 지진방재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
## 3. 관계법령

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3조

## 4. 예산조치: 부서 의견 반영 필요

5. 입법예고: 2020. 5. 13. ~ 5. 17.

6. 조례안 : 붙임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, 내용,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진재해”란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.
2. “지진방재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,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
2.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·운용 등에 관한 사항
3.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·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
4. 지진대피장소 지정·관리 및 지진 훈련·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지진방재사업)**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
2. 공공·민간 지진방재 교육·홍보자료 개발
3.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■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(약칭: 지진대책법)

[시행 2019. 3. 14.] [법률 제15460호, 2018. 3. 13., 타법개정]

**제3조(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(이하 "지진·화산재해"라 한다)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,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·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·예방·대비 및 대응, 내진대책, 지진·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,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5. 7. 24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·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, 지진·화산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의 공유,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"재난관리책임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지진·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### 1. 지진·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

가. 지진·화산재해 경감대책의 강구

나.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·시행

다.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

라. 지진방재와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·훈련 및 홍보

### 2. 내진대책

가.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시설물별 허용피해의 목표 설정

- 나.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(이하 "지진위험지도"라 한다)의 제작·활용
- 다. 내진설계기준 설정·운영 및 적용실태 확인
- 라.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
- 마.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
- 3. 지진·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·분석·통보·경보전파 및 대응
  - 가. 지진·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시설·장비의 설치와 관리
  - 나. 지진·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·통보
  - 다. 지진·화산재해 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
  - 라. 지진·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대처요령 작성·활용
  - 마. 지진·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
  - 바. 지진·화산재해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
- 4.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진·화산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